

I. 들어가며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관련하여 보도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五十嵐, 1991; 牧野, 2013). 범죄 보도를 사건의 발생, 수사, 재판으로 분류한다면, 일본의 범죄 보도는 수사 보도에 집중되어 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수사 정보에는 오해와 편견이 많으며, 오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보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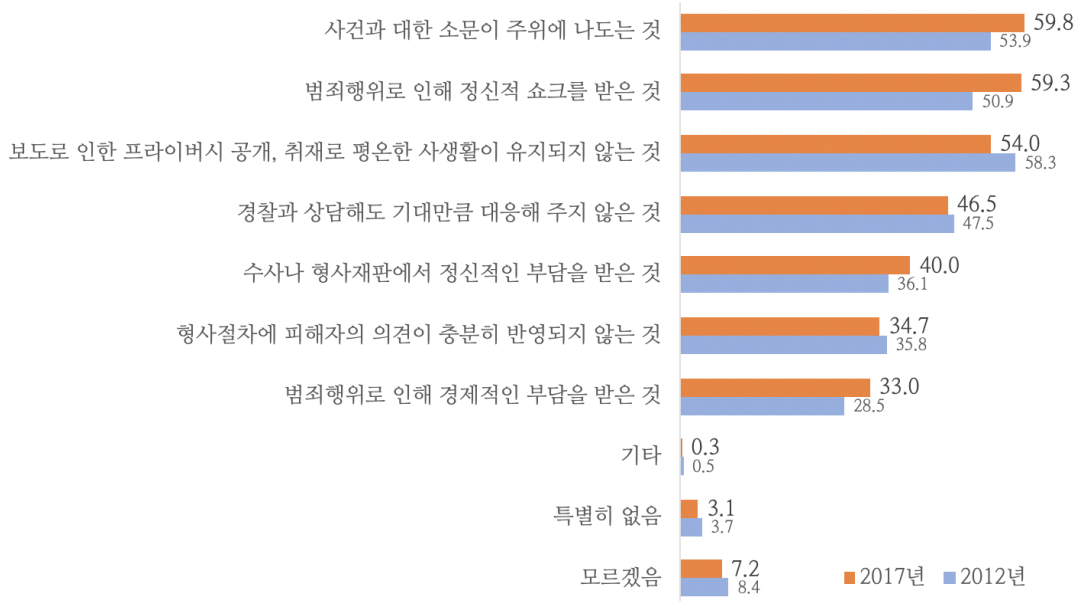
내각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¹⁾,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중에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평온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54.0%이었다. 이는 5년 전 조사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성별로는 여성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5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도 피해’(報道被害)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도 피해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보도로 인해 취재 대상자가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말하며, 생활 파괴,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을 불러일으키는 것”(粹澤, 2013:22)을 말한다. 보도 피해는 “어떤 피해에 부수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최초 피해와 부수적인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諸澤, 1998:133)이다. 보도 피해는 사건 보도나 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다.

* 동경대 언론학 박사수료, ahnchanghyun@gmail.com

1) 이 조사는 내각부가 5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집한다. 2017년에는 10월 5일부터 10일 간 개별 면접법으로 조사했다. 유효응답은 1,758명이며, 응답률은 58.6%이었다.

[그림 1]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인권문제(복수응답, %)



출처: 内閣府政府広報室(2017). 人権擁護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2017年 12月), p.22.

범죄 보도와 성범죄 보도는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지만, 보도 행태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인격권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과열보도로 인한 생활상의 지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격권 침해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와 3차 피해를 일으킨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보도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성범죄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유형과 사례

성범죄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그만큼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1990년), 츠쿠바 모자살인사건(1994년), 도쿄전력 여직원 살해사건(1997년) 등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주간지와 TV 와이드 쇼 등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누드

사진과 사생활을 폭로하는 정보를 게재하기도 했다. 피해는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로 증폭됐다.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유형은 다양하다. 아즈사와(梓澤) 변호사는 보도 피해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2007). 즉 ① 억울하게 범인으로 보도되는 경우, ② 완전한 무죄는 아니더라도, 정보가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사회적 제재를 불러일으키는 피해, ③ 프라이버시 침해, ④ 범죄 피해자의 보도 피해 등이다. 코바야시(小林)는 보도 피해의 법적 측면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기정보 통제권, 초상권 침해, 집단적 과열취재, 집중호우형 보도로 인해 침해 등으로 구별한다(2014:24-29). 여기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과열보도로 인한 생활권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정리한다.

1. 명예훼손

성범죄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명예훼손이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고 명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침해위험성이 생기는 경우에 성립된다.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공개의 요건에 의견이나 논평까지 포함하고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제709조, 제710조), 위자료와 명예회복 수단²⁾(제723조)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면책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그 목적이 단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에 이를 벌하지 않는다”(제230조의 2)³⁾. 즉,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표현이라도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성(진실 상당성)이 인정되면 면책되는 것이다. 특히, 진실성의 법리는 보도 내용이 진실과

2) 대표적으로 사과 광고, 반론문 게재, 사전 금지 등이 있다.

3) 이 외에 체포나 기소되기 전에 용의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정치가와 공직 선거 후보자, 공무원도 진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면책을 인정한다(宍戸, 2011; 松井, 2013). 상당성의 법리는 1966년과 1969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확립되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보도에는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취재 단서, 취재 대상자, 취재 방법, 취재 내용, 취재 결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범죄 보도에서 보도량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矢島, 1991), 보도 양태도 독특하다(四方, 2011).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생활상과 이성 관계, 친구 관계 등을 자세하게 언급한다(四方, 2011:56). 또한,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가 유혹했다” 등 성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논조로 보도한다. 이는 성폭행은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해서 일어난다며, 여성이 조심했어야 했다는 편견을 양산한다. 이를 시카타는 ‘아담·이브 증후군’, ‘강간 신화(rape myths)’라고 비판한다(2012:136-7).

성범죄 보도는 선정성도 문제된다(四方, 1996; 小林, 2014).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의 성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언급되고,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코바야시는 “성관계 폭로와 강조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보도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이기도 하다”(2014:54)고 지적한다. 시카타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1989년)과 기후(岐阜) 여중생 살해사건⁴⁾(2006년)에 대한 신문 보도를 비교하면서, 두 사건의 보도 태도에 변화가 없으며, 여성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이성 관계를 강조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실명, 때로는 얼굴 사진이 게재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언급하며, 그것이 범죄에 말려든 원인이 된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 피해자를 재판 받는 입장으로 전락시키며, 그 배경에 ‘강간 신화’와 ‘이중적 성윤리’가 있다”(細井·四方, 1995:31)고 할 수 있다.

4) 2006년, 기후 현의 폐허인 ‘파칭코 점포’에서 여중생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흘 뒤에 친구였던 고교 남학생이 체포되었다. 당시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일기 식 블로그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부각했다.

(1)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보도 사례

이러한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989년에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의 가해자 4명이 여고생을 유인하여, 41일 간 감금하고 폭행과 강간을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채워 유기하였다. 이 사건은 범행이 흉악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방송과 신문, 주간지 등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 소녀도 불량 서클에 소속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자식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소녀는) 결코 소년들의 반대편에 있던 아이가 아니었다”(週刊ポスト, 1989년 4월 21일호)고 단언하는가 하면, “소녀는 무단 외박도 자주 하는 비행소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朝日新聞, 1989년 4월 4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보도가 많았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주간지의 보도가 과열되었다. 이 중 〈슈칸분춘(週刊文春)〉은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소년법(제61조)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소년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슈칸분춘〉은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명, 부모 이름과 경력 등도 게재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1997년에 발생한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 사건’이다. 살해된 여성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전력에 근무하는 관리직이었다. 그러나, 퇴근 후에는 매춘을 행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매스미디어는 이 사건의 피해 여성에 대해 흥미 위주의 정보를 보도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줄어들었지만, 피해자를 둘러싼 선정적인 폭로가 증가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 근무처, 학력,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자택, 장례식 영상, 피해자의 밤 생활에 대한 흥미 위주의 관음적 정보를 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日本弁護士連合会人権擁護委員会編, 2000:161-164).

2. 프라이버시 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권리로 인정한 것이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름과 주소, 학력, 가족 관계, 취미, 사상 등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와 함께, 개인정보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개인정보법 제2조 제1항)을 말한다.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 피해자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小玉·中·黄, 1999).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1997년)’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 사건은 살해된 피해자가 고학력으로 일류 기업의 관리직 여직원이었다는 점과, 밤에는 매춘을 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언론은 피해여성의 실명과 얼굴 사진, 회사, 학력,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자택, 장례식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사적 행동까지 선정적으로 폭로했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시한 선정적 보도였다. 성범죄 보도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윤리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1)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 사건 보도 사례

범죄 보도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는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 사건(桶川ストーカー殺人事件)’이다(粹澤, 2007). 1999년, 여대생이 협박과 괴롭힘, 비방증상을 당한 뒤에 역 앞에서 살해되었다. 사건 2개월 후, 살인 혐의로 4명이 체포됐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의 형이었으며, 전 남자친구는 자살하였다. 이 사건은 유족이 “딸은 세 번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언론과 경찰, 사법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가해자로 언급된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괴롭힘(스토커) 피해 신고를 무시했으며, 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유족은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최고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태만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령했다.

세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피해자 여성의 이름과 얼굴을 보도했다.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간, 아침부터 밤까지 피해자 유족의 집 주변에 보도진이 집을 치고 있었다. 결국, 유족은 방송업계 자율규제기관인 방송인권위원회에 과열취재 자제를 요구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사에 유족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피해

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도 있는 취재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는 과열됐으며, 마치 여성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가 넘쳐났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피해 여성의 시계와 핸드백의 상표까지 공개했다. 게다가 전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정보와 함께, 민방의 와이드 쇼와 주간지, 스포츠 신문 등에서는 피해 여성이 “브랜드 중독증”,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신문에서는 “호스텔스로 일했다”는 기사도 작성하였다. 또한, 오보도 양산했다(清水, 2018:35, 341). “실행범이 체포되자, 유족은 선물용 과자를 들고 경찰을 방문해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으며,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며 거짓 설명까지 받아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키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이 제정되었다. 언론은 경찰 취재와 피해자 보도를 반성하고, 피해자 보도의 의의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경찰은 단일한 수사와 은폐 혐의가 드러났으며, 경찰 3명이 징계면직,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2001년,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집단적으로 취재하는 집단적 과열취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카타(2011)는 2000년대 이후의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실명, 연령, 주소, 학교나 직업, 얼굴 사진 게재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실명과 연령, 직업 등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소와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면, 2008년 ‘마이즈루 여고생 살해사건(舞鶴女子高生殺害事件)’을 보도하면서, 신문은 여성 피해자가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했다. 생전의 복장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화려한 옷을 즐겨 입었다고 했다. 그 외에, 과거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은 것과 피해자의 블로그도 소개하였다.

특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상대적으로 범죄 보도를 많이 다룬다. 일본의 지역신문은 지역별 시장점유율이 전국신문보다 높다. 지역방송은 지역뉴스를 매일 방송한다. 독자와 시청자는 현지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밝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그만큼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가고시마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강간치상사건 판결 보도 사례

가고시마의 지역민방은 2010년 10월 가고시마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강간치상 사건 판결을 보도하면서 “옆집 여성을 폭행한 남자에 징역 7년”이라는 제목으로 “○○시 무직 ○○피고”가 “옆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폭행했다”고 언급했다. 이 뉴스는 피고의 주소를 기초지자체로 특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의 옆집에 주거했다고 보도하여, 적어도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짐작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방송 이후에 뉴스 원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해당 원고는 피해자가 다음 해 1월 홈페이지 내용을 우연히 보고 변호사를 통해 항의·삭제하기까지, 3개월 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하여 기소장 낭독, 모두 진술, 논고, 변론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1심에 출석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가 피고인 질문과 피해자 의견 진술을 대신했다. 피해자는 방송사의 홈페이지 기사를 열람한 이후, PTSD가 재발하여 주치의로부터 “집에서 30분 이상 이동을 금지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심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3. 초상권 침해

성범죄 보도는 초상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초상권은 ‘누구든지 함부로 자신의 용모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인격권 혹은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大家重夫, 2011).

성범죄 보도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관련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경우, 주간지 <여성자신(女性自身)>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피해 여성의 핫팬츠와 수영복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정리한 시민단체는 “미모로 남심을 자극하는 소녀의 이미지를 자아내며, 죽은 뒤에도 소녀의 인격을 멸시한다. 사자에게 초상권이 없다는 것인가. 사자에게 명예훼손이 없다는 말인가”(死刑をなくす女の会, 2004: 128-131)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소년법에서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오는 소년 혹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 이름, 연령, 직업, 주거, 용모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도록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제61조)고 규정하고 있다.

4.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생활권 침해

성범죄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집단적 과열취재로 전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집단적 과열취재는 어린이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鈴木·山田 2019:68-69).

집단적 과열취재는 대형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의 집·회사 등에 대규모 취재진이 쇄도해 취재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한다. 이는 슬픔에 빠진 가족의 심정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오케가와 스토키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방송사의 집요한 취재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방송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피해를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집 앞에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고, 가족의 모습을 비춰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살해된 딸 사진이 계속해서 방송되고, 가족사진은 방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비출만한 것은 모두 드러낸다. 초등학생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집요하게 달려든다. 이웃에게도 폐를 끼쳐 이대로는 이곳에서 살 수도 없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피해자에게 자살이라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放送人權委員會, 1999)』

이러한 집단적 과열취재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키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족이나 관계자에게는 생활권을 침해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미디어 스크림(メディアスクラム)’이라고 부르는데, “대형사건, 사고의 당사자나 그

관계자에게 다수의 미디어가 쇄도해 당사자와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생활을 방해하거나, 막대한 고통을 주는 상황을 양산하는 취재”(日本新聞協會, 2001)를 의미한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제를 발표해 왔다.

한편, 모바일 미디어의 발달은 성범죄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바일 미디어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데, 특히 성범죄 보도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지고, 가짜뉴스(fake news)가 범람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N차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 발생한 ‘교토교대 집단폭행사건(京都教大集団暴行事件)’의 경우, 대학생 6명이 준강간혐의로 체포되자, 온라인에서는 “방으로 따라 간 피해자가 나쁘다”, “왜 술자리에 참여했나”, “합의금을 노렸다”는 등 피해 여성을 비방하고 증상하는 내용의 댓글이 잇따랐다.

III. 성범죄 보도 관련 주목할 만한 판례 및 입법례

1. 범죄피해자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은 2004년 12월에 제정됐다. 이 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기본이념을 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이 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4조). 지방정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5조). 또한, 중앙정부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정해야 하며(제8조), 내각부에 ‘범죄피해자실시추진회의’를 설치해야 한다(제24조).

정부는 필요한 법제와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① 범죄피해자 백서 발간, ② 상담 및 정보 제공, ③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원, ④ 지원금제도 확충, ⑤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⑥ 안전 확보, ⑦ 주거 안정, ⑧ 신용 안정, ⑨ 고용 안정, ⑩ 보호·수사·공판과정에서 배려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시행에 맞춰,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은 범죄 피해자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보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은 것은 ‘범죄 피해자의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판단이다. “경찰의 피해자 실명 발표와 익명 발표에 대해서, 익명 발표를 원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견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하는 실명 발표에 대한 요망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발표의 공익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구체적인 안전마다 적절한 발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고 하였다. 결국, 지역경찰이 판단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실명과 익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⁵⁾.

2.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사건보도와 관련된 판례로는 1972년 최고재판소에서 수사당국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 “신중하게 보강 취재를 해야 했다”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1990년 도쿄지방법재판소는 피의사실이 성립하지 않은 경찰의 체포를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에 나서는 경찰서 수사관이 수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명된 피의사실을 기자회견 등에서 공개한 경우, 그 발표 내용에 의문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그렇지 않은 한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보도가 용의자 체포 순간에 집중돼 있으며, 상당성의 법리는 이를 정당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宍戸, 2011:209).

성범죄 보도를 포함해 범죄 보도에서 ‘실명보도’가 쟁점이다. 일본에서 범죄 보도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실명보도의 의의는 판결로 인정받기도 했다.

5) 2016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제3차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서는 네 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범죄피해자 시책은 첫째, 존엄에 어울리는 처우를 권리로 보장할 것, 둘째, 개개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할 것, 셋째, 중단 없이 시행할 것, 넷째, 국민의 총의를 형성하면서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

서류송검 사실의 경칭을 생략한 용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한 책임을 다루는 소송에서 나야 고등재판소는 “보도에서 피의자의 특징은 범죄 뉴스의 기본적 요소이며, 범죄 사실 자체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이라고 인정했다. 피의자 특징의 방법과 정도는 “범죄 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질(공인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피해자 측의 피해 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 형량하고,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그리고 알권리 옹호와의 균형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보도와 명예훼손을 다룬 사례로는 2009년 2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오키나와현의 중학교 교사가 실명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NHK>와 지역민방 3사를 상대로 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 교사는 오키나와현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2007년 3월 체포되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체포 사실과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용의자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자 특징이 우려된다며 실명 발표를 거부했지만, 언론사의 요구로 오키나와현의 경찰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용의자 실명과 주소를 공개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용의자가 질병으로 휴직중이라고 설명했다.

<NHK> 등 언론사는 용의자의 실명을 포함해 체포사실을 보도했다. 용의자 체포 직후 담당 변호사는 언론사에 교사와 여중생은 교제 중이며,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곧 복직하기 때문에, 복직에 지장이 없도록 실명보도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용의자가 석방된 사실은 보도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1심인 나하지방재판소는 2008년 3월 “실명보도는 익명보도와 비교해 피의자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무죄가 판명되더라도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진범이 판명된 것이 널리 보도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곤란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실명보도가 해당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가족 등의 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그 정당성은 일찍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소년범 이외에 “실명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최근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 특히 공립학교 교사

가 학생을 상대로 한 파렴치죄는 실명보도가 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립 학교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비추어 상응의 합리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중 학교 교사에 대해 실명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본건의 피의사실은 공립중학교 교사가 지도를 받는 입장인 여중생에 대해 추잡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NHK> 등이 실명보도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위법성을 결여한다”고 판단했다.

2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는 2008년 10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실명보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피의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실이라는 점, 보도기관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요구되며, 보도의 정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익명보도가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을 특정한 실명보도가 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본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교사가 체포된 것을 실명으로 보도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명보도에서 감안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실명을 공표하지 않는 법적 이익에 관해서는 교사는 질병으로 휴직 중이었지만, 중학교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 본건의 보도가 오키나와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일반 시청자에 대해 교사가 체포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인 조례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따라서 체포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된 경우에는 교사가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극히 곤란하다는 점, 실명보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피의 사실과는 무관계인 교사의 가족 등의 생활에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NHK> 등이 교사의 기소 유예를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체포된 사실이 한번 실명으로 보도되면, 이후에 사실무근으로 판명되거나 불기소로 종료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 체포된 사실을 보도하고도, 그 뒤의 경과 조치(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해서는 뉴스 가치가 없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는 태도에는 생각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보도는 아니지만, 최고재판소는 2016년 9월 실명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에 체포돼 불기소된 남성이 실명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주니치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했다. 체포 혐의를 잘못 보도한 <마이니치신문>에 110만 엔을 지급하라는 2심을 확정했다.

3. 성범죄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피해자단체의 움직임도 성범죄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에 ‘전국범죄피해자모임’이 설립되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가 성범죄사건을 재판원재판에서 제외할 것을 최고재판소와 검찰청에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지방재판소와 지방검찰청에 배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용서하지 않는 여성모임’은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와 기자로 구성된 ‘성폭력과 보도 대화모임’은 2016년에 ‘성폭력 취재를 위한 가이드북’(性暴力被害取材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을 발표했다. 2015년 6월부터 성폭력 피해자(survivor)와 기자가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이해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북은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취재하는 기자를 위해, 취재에 응할 때의 주의할 점과 취재할 때의 배려를 정리한 것이다.

가이드북에서는 우선, 성범죄 피해자가 취재를 받을 때의 확인 사항과 기자가 취재할 때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둘째, 취재를 받은 피해자의 사례와 취재를 한 기자의 소감 등을 정리했다. 셋째,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취재, 안정적인 취재 방법, 당사자의 취재 경험을 소개했다. 넷째, 취재로 인한 피해와 회복, 언론사 간부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IV. 성범죄 보도 자율규제 동향 및 시사점

1. 언론계의 자율규제

일본에서 범죄 보도는 1989년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잉 보도와 오보 등으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피의자’ 대신에 ‘용의자’를 사용하였다⁶⁾. 1993년에는 <아사히신문>이 ‘미디어란’을 통해 보도 검증과 ‘미디어 비평’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면심의회’도 설치하였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에 잇따라 발생한 성범죄를 보도하면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범죄 보도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윤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日本弁護士連合会, 2000). 또한,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보도 피해 대책을 구실로 미디어규제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⁷⁾, 그 결과 신문과 방송은 자율규제를 내세웠다. 방송에서는 1997년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방송인권위원회기구(放送と人権等権利に関する委員会機構: BRO)를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일본신문협회가 신문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으며, 2001년에는 일본신문협회가 ‘집단적 과열취재 관련 견해’를 발표했다.

2. 신문 보도기준과 자율규제기관

(1) 신문윤리강령 및 방송기준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신·신문윤리강령’에서는 알권리와 인권 존중이 부각되었다.

6)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법률용어이다. 반면, ‘용의자’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1989년까지 범죄 보도에서 피의는 경칭을 사용하지 않고 불렀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서는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7) 대표적으로, 1995년 지상파 민방 <TBS>의 음진리교 관련 보도를 계기로 우정성은 ‘다채널시대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다. 1998년에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자 보도를 감시하기 위한 ‘보도모니터제도’를 신설했으며, 1999년에는 ‘보도와 인권 검토회’를 설치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른바 ‘미디어규제 3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설립되었다.

“신문은 인간의 존중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보도를 잘못된 때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명예를 해쳤다고 판단한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보도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日本新聞協會, 2006:5). 실명보도는 익명보도와는 달리 강한 소구력을 가지며 사실의 무게를 전달한다. 실명은 뉴스의 기본 요소인 5W1H의 하나이다. “이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익명과 가명으로 조직된 공동체는 건전하지” 않으며, “이름은 사람이 개인으로 존중받는 기초이며,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日本新聞協會, 2006:58).

일본신문협회는 집단적 과열취재가 문제되자, 2001년에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한 견해를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 이 견해에서는 집단적 과열취재를 정의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피해자, 용의자, 피고인, 그 가족, 주변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로 규정했다. 집단적 과열취재를 막기 위해 최소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 ① 싫어하는 당사자나 관계자를 집단적으로 강제로 포위한 상태에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초등학생과 유아의 경우, 취재 방법에 특단의 배려를 요한다.
- ② 밤샘 장례식, 사체 반송 등을 취재하는 경우, 유족과 관계자의 심정을 짓밟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복장과 태도 등에도 유의한다.
- ③ 주택가와 학교, 병원 등 평온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취재는 취재차량 주차방법을 포함해 인근의 교통과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020년 6월에도 일본신문협회편집위원회는 가맹사에 집단적 과열취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요청했다. 요청에서 “실명은 사실의 핵심이며, 정확한 보도가 불가결하다”면서도, “취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을 가하기도 하며, 실명보도를 거부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미디어 스크럼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는 현장에서 협의하고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도기관의 대표사가 취재를 신청하고, 기자회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 취재를 신청한다고 했다.

한편, 2000년을 전후해 신문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배려한 보도에 나서기 시작했다. 자율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성범죄 보도기준도 간략하게나마 기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와 직업, 연령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사망 사건에서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가능한 익명으로 전환한다. 어린이와 소녀의 유괴사건 등에서 성적인 동기가 의심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게 된 시점부터 익명으로 한다. 성범죄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 단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한다. 이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명보도를 원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事件の取材と報道編集委員会, 2005:66).』

『성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전체 기술에서 배려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 시작 이후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성범죄이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는 죄명은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부녀폭행 방법과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사로 다루지 않지만, 보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쓸 수 있다(読売新聞社編, 2003:248).』

(2) 신문사 자율규제기관

한편, 신문사에서는 지면심사회에서 기사내용을 심의한다. 대부분 전국신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89년에 ‘아사히신문지면평의회’를 설치했으며, 2001년에는 ‘보도와인권위원회(報道と人権委員会)’를 신설했다. 2015년 4월에는 ‘퍼블릭 에디터’(public editor)를 도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00년에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다. 사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과 의견에 견해를 제시하고, 신문지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요미우리신문>도 2001년에 신문감사위원회고문(「新聞監査委員会」顧問)을 설치하였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응하는 자율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1〉 신문사의 자율규제

사명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기관명	보도와인권위원회	열린신문위원회	신문감사위원회고문
설립	2001년 1월	2000년 10월	2001년 6월
위상	사장 직속	주필 직할 (편집국에서 독립)	사장 직속

사명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위원구성	3명	4명	3명
목적	- 보도의 자유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구제 - 보도와 인권에 대해 의견 제시	-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및 불만 대응에 대한 견해, 의견 제시 - 지면 관련 의견 제시 - 21세기 미디어 제언	- 제3자의 입장에서 신뢰받는 신문 지향
피해구제	- 심리 결과를 '견해'로 발표	- 인권침해에 대한 검증 - 신문사 견해 지면 게재	-
결과발표	견해를 신청자 승인 후 지면에 발표	결과는 지면 공개	사안마다 판단하여 결정
대상미디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이 보도	신문 기사 원칙	신문
대상자	개인 한정(공인 제외)	개인 한정(공인 제외)	-

(3) 방송업계 자율규제

1)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 및 보도지침

일본민간방송연맹은 1997년에 보도지침을 제정한 뒤, 2003년에 개정했다. 이는 보도·취재 시의 자세와 인권 존중 및 보도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리하면, 우선 인권존중에서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부당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보도 활동은 취재·보도되는 측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였다.

- ①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존중한다.
- ② 인종·성별·직업·처지·신조 등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중시한다.
- ③ 범죄 보도에서는 범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 측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인다. 취재 받는 측에게 일방적인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보도는 피한다.
- ④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아픔과 고뇌에 배려한다. 사건·사고·재해 피해자·가족·관계자에 대해 절도를 가진 자세로 접한다.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⑤ 보도 활동이 보도 피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만일 보도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구제수단을 강구한다.

보도 표현에서는 절도와 품위를 가지도록 요구하였다. 과도한 연출, 선정성은 보도 활동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 ① 과도한 연출과 시청자·청취자에게 오해를 주는 표현 수단,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익명 인터뷰, 모자이크 남용을 피한다.
- ② 불공정한 편집 방법, 잠재의식(subliminal) 수법, 이와 유사한 수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자료영상·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현실의 영상·음성과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시청자·청취자에 이해받기 어려운 수법을 사용했을 때는 그 취지를 원칙적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방송 지침은 방송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 기준 가운데 범죄 표현과 성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0장 범죄 표현

- (66) 범죄를 긍정하거나, 범죄자를 영웅 취급해서는 안 된다.
- (67) 범죄수법을 표현할 때는 모방하고자 하는 기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68) 도박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소극적으로 다루며,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69) 마약과 각성제 등을 사용하는 장면은 소극적으로 다루고, 매력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70) 총포, 흉기류 사용은 신중하게 하고, 살상 수법에 대해서는 모방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71) 유괴 등을 다룰 때는 그 수법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 (72) 범죄 용의자의 체포와 심문 방법, 소송 절차와 법정 장면 등을 다룰 때는 바르게 표현하도록 주의한다.

제11장 성표현

- (73) 성에 관한 사항은 시청자에게 곤혹, 혐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74) 성 감염증과 생리위생에 관한 사항은 의학 상·위생학 상, 바른 지식에 의거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 (75) 일반 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에서도 과도하게 관능적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76) 성범죄, 변태성욕, 성적 도착을 표현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자극적이어서는 안된다.

(78) 전라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육체의 일부를 표현할 때는 천박함·외설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2) <NHK>의 방송가이드라인

<NHK>는 방송가이드라인에서 사건·사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보도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도를 통해 법 정비와 수사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사건·사고보도는 진상과 배경을 추적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실명보도가 원칙이라고 제시했다. 방송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과 익명, 피의자·피고의 인권과 호칭, 재판원제도, 소년 사건, 영상, 집단적 과열취재, 유괴 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과 비교해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으며, 2004년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기본법에서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그 권리를 존중받아 왔다고 하기 어렵다”, “직접적 피해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도 부차적인 피해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의익이 보호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 보도의 위상에 대해서도 취재 방법에 피해자의 심정을 무시한 경우가 있었다는 반성이 있다. 과열된 취재와 보도, 무신경한 언어 사용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장에 달려온 가족을 가로막는 듯한 취재는 하지 않는 등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 폭력단이 관계된 사건 및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검토하여 익명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로그램 심의기관

방송법에서는 프로그램 심의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제6조). 프로그램 심의기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방송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둘째, 방송사에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에는 답신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사는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는 프로그램 심의기관에 보고 의무도 가진다. 보고 내용은 자문 관련 조치내용, 정정방송 및 취소방송의 실시 상황,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불만 및 의견 개선 등이다. 프로그램 심의기관은 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기능은 없지만, 프로그램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의한다. 논의된 사안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설명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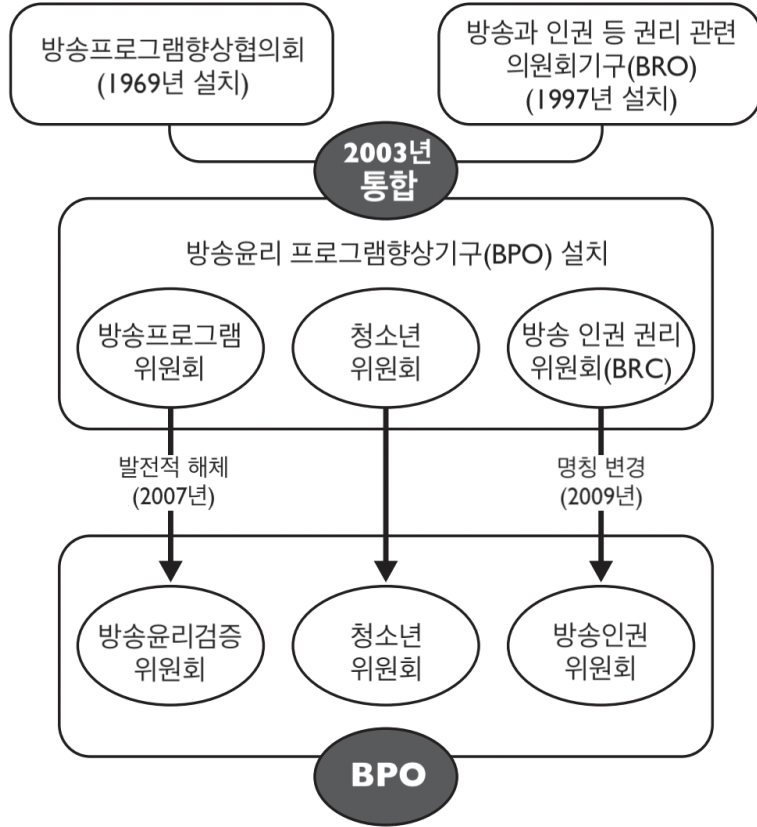
4) 자율규제기관: BPO

방송업계에서는 제3자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규제방식이다. 제3자 기관은 총무성이 독립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점, 법정기관인 프로그램심의회의 한계 등이 낳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피하기 위한 업계 자율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는 2003년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기존의 유사조직을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되었다. 방송에 대한 불만과 방송윤리에 대응하는 제3자 기관으로 규정한다. BPO는 임의 단체이며, 산하에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2년,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BPO 설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가맹사는 BPO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운영에 협력하며, 세 위원회가 지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포함한 대응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민방방송연맹 가맹사는 별도로 BPO의 운영에 협력하고,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대응책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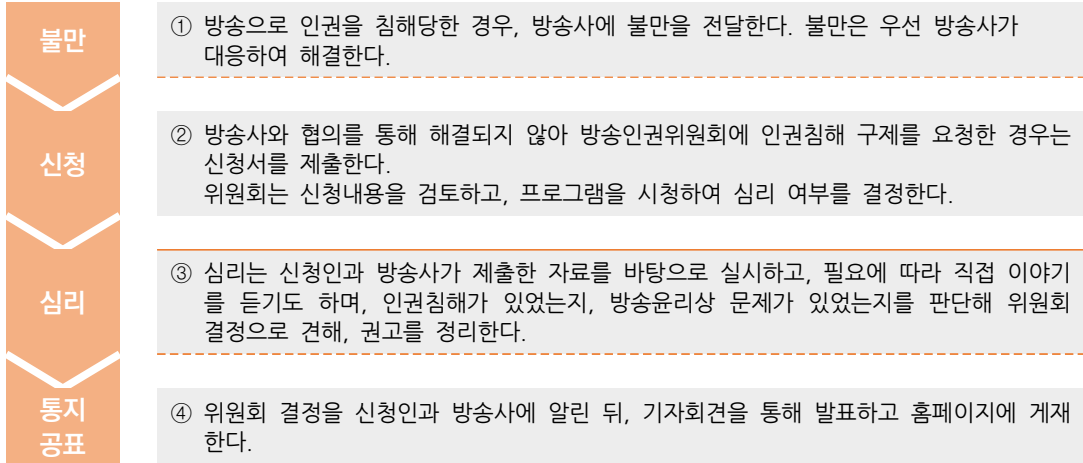
[그림 2] BPO의 변천과정



출처: 塩田幸司(2019:197).

BPO 산하의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으로 명예·프라이버시 등의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신청을 바탕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이는 재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불만처리기관이다. 신청은 방송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 이와 관련된 방송윤리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공평을 결여한 방송으로 인해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심리할 수 있다. 심리 결과는 권고와 견해로 발표한다. 권고는 인권 침해나 방송윤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오며, 견해는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요망의 경우에 발표한다. 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5명, 변호사 3명, 언론인 1명, 화가 1명 등 10명이다.

[그림 3] 신청에서 결정까지 과정



출처: BPO홈페이지

방송인권위원회는 1997년 설립된 이후 2020년 8월까지 모두 72건의 결정을 발표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며, 결정은 판단 기준과 판단 가이드의 형태로 축적해 발표하고 있다.

<표 2> 방송인권위원회의 판단내용

권고	인권침해(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방송윤리상 중대한 문제 있음
견해	방송윤리상 문제 있음
	요망(방송사의 방송 표현에 대해 대응을 요망)
	문제 없음

출처: BPO홈페이지

방송인권위원회가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결정으로는 지방공무원(신청인)이 <TV쿠마모토(TKU)>와 <쿠마모토현민TV(KKT)>를 상대로 제기한 심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TKU>와 <KKT>는 자사 뉴스프로그램에서 지방공무원이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이 문제 삼은 것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뉴스에서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갔으며, 동의 없이 옷을 벗겼다는 등 신청인이 인정하지 않은 혐의까지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비열한 범행’ 등의 코멘트

를 통해 신청인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도 무단으로 방송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내용을 “신청인이 추행 목적을 가지고 의식이 몽롱한 여성을 동의도 없이 자택에 데리고 갔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여성의 옷을 동의 없이 벗겼으며,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신청인은 이 세 가지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신청인이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의혹도 있다며, 계속해서 추궁할 방침”이라고 정리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이 중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체포된 피의사실이며 신청인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경찰의 견해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고, 판결도 아니며, 기타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성의 증명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서 부서장의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설명”을 듣고, 취재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예를 훼손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윤리상의 문제를 검토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증거도 없는 체포 직후 단계에서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찰당국의 발표만을 의존해, 특단의 유보도 없이 사건에 이른 경위 부분까지도 사실인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방송윤리기본강령’이다. “보도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공평하게 전달하고,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방송윤리기본강령은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1996년에 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언론인 출신의 위원은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 3사의 기사와 방송 내용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부서장의 발표와 설명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서장의 발표와 설명은 명확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건의 방송은 용의자 체포 직후 사건 보도의 흐름 상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경찰당국의 발표와 설명을 일탈한 부분은 없다. 이번 방송에 방송윤리상 특단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방송업계에서는 위원회 결정에 반발이 적지 않았다. <TKU>와 <KKT>는 3개월 뒤인 2017년 6월 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보고했다. 양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원회 결정을 전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내 보고와 주지 활동을 소개했으며, 연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TKU>는 보도부의 대응으로 뉴스 원고를 해설자에게 최종 확인을 부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영상과 자막도 체크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고하였다. <KKT>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디까지가 체포 혐의이고, 어디까지가 경찰의 짐작인지 확인할 것, 용의자가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뉴스 원고의 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영상과 자막도 데스크와 디렉터, 아나운서 이외에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자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2016년 2월, <후지TV>의 프로그램에서 다룬 스톡커 사건 관련 영상이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후지TV>는 2015년 3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뉴스 만찬회(ニュースな晩餐会)’에서 지방도시의 식품 공장에서 벌어진 스톡커 사건과 집단 괴롭힘을 다루었다. 방송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식품 공장 직원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재연 영상과 식품 공장 직원의 인터뷰 영상, 신청인의 몰래카메라 영상, 직장동료 간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등을 넣은 영상을 방송했다. 신청인은 스톡커 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알려졌으나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지TV>는 관계자 영상 등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했으며, 재연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거해 일부 재구성한 것’이라는 자막을 달았다고 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을 방송한 것이며,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의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인권위원회는 주차장 영상과 신청인 관련 정보, 직장 관계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직장동료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재연 영상과 자막 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취재에서도 당사자의 취재에만 의존하여 직장 내에서의 처우 관련 불만과 갈등, 사건의 배경이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았으며, 신청인의 불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인권위원회는 결정사항을 방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과 방송윤리를 더욱 배려하도록 요망한다고 결정했다.

V. 나오며

현재 일본에서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에서 최대 쟁점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자를 실명으로 보도할 것인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가’이다. 제도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신원 발표는 경찰이 판단한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의 실명을 발표할 것인가, 익명으로 발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2005년에 일 정부가 발표된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 의거한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이 발표되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신문협회는 즉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단체는 “‘피해자 이름을 실명으로 발표할 것인가, 익명으로 할 것인가’를 경찰이 판단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익명발표로는 피해자와 그 주변 취재가 어려워지고, 경찰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 검증, 보도로 국민 알권리에 부응한다는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발표는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에서 실명발표를 하더라도, 실명보도와 익명보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였다. <NHK>와 민방, 신문사 등이 가입한 일본신문협회는 실명보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① 실명은 5W1H 중에서도 ‘누가’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의 핵심이라는 점, ② 실명은 독자적인 취재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 ③ 실명이 있으면, 오류를 발견하기 쉽고 진실성을 담보하게 된다는 점을 든다.

일본신문협회는 실명보도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기한다. ① 실명을 통한 보도는 익명과 비교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강한 소구력을 가지고 사실의 무게를 전달한다는 점, ②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 ③ 피해사실과 배경을 독자적인 입장에서 사회에 호소하려는 피해자가 있는 점이다.

가해자의 익명보도도 쟁점이다. 학계에서는 범죄 보도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피의자를 범인 취급한다며, 권력 범죄를 제외한 범죄 관계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淺野, 2004).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해자도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가해자를 익명으로 보도하면 피해자의 특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익명보도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회적 제재를 면하게 된다는 반론도 있다. 반면, 피해자는 소문에 의한 피해를 받으면서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대상이며,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과열취재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와 취재 양태는 '보도 피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보도 피해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⁸⁾이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보도 피해자나 성범죄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없다. 보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언론에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방송에서는 자율규제기관인 BPO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BPO는 법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8) 공식명칭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법률'이다. 형사재판 방청 우선권, 형사기록 열람 및 복사, 피해자 재판 참여시 교통비 제공,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손해배상 명령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REFERENCE

- 内閣府政府広報室(2017). 人権擁護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2017年12月). URL: <https://survey.gov-online.go.jp/h29/h29-jinken/index.html>
- 日本新聞協会(2001). 集团的過熱取材に関する日本新聞協会編集委員会の見解(2001年12月6日). URL: https://www.pressnet.or.jp/statement/report/011206_66.html
- 日本弁護士連合会編(2000). 〈人権と報道報道のあるべき姿を求めて〉東京: 明石書店.
- 日本弁護士連合会人権擁護委員会編(2000). 〈人権と報道〉東京: 明石書店.
- 牧野智和(2013). 罪報道の国際比較分析: 日米英三カ国の新聞報道を素材にして. 〈ソシオロジカル・ペーパーズ〉 No.22: 95-108.
- 佐藤潤司(2013). BPO「放送人権委員会」の審理に 関する批判的考察: 決定第46号の事例を中心に.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82: 133-151.
- 曾我部真裕(2019). 報道界挙げて社会と対話を: ネット時代の被害者報道と 実名報道原則〈新聞研究〉 No.819: 16-19.
- 鈴木秀美・山田健太編著(2019). 〈よくわかるメディア法[第2版]〉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清水潔(2018). 〈桶川ストーカー殺人事件: 遺言〉東京: 新潮社.
- 諸澤英道(1998). 〈新版被害者学入門〉. 東京: 成文堂.
- 諸澤英道(2016). 〈被害者学〉東京: 成文堂.
- 沢田和樹(2019). 「娘は3度殺された」教訓を忘れるな—遺族の訴え 桶川ストーカー殺人20年 (上) 共同通信(2019年11月25日). URL: <https://www.47news.jp/47reporters/4251164.html>
- 沢田和樹(2019). 報道被害, 癒えぬ傷 100%は消せないデマ 警察重視、特オチ…残る事件取材の問題点・桶川ストーカー殺人20年 (下) 共同通信(2019年11月27日). URL: <https://www.47news.jp/4258763.html>
- 性暴力と報道対話の会(2016). 性暴力被害取材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 URL: https://siab.jp/heart/wp-content/uploads/2016/12/2016_12_01_b.pdf
- 四方由美(2010). 日本の犯罪報道における女性: 女性被害者・女性被疑者. アジア女性交流・研究フォーラム(編) 〈アジア女性研究〉 20:55~66.
- 四方由美(2011). 日本の犯罪報道における女性: 女性被害者・女性被疑者, 〈アジア女性研究〉, 第20号: 55-66.
- 四方由美(2012). 〈マスメディアと社会生活: ジェンダー・地方・ダイバーシティの視座から〉.

- 東京：学文社.
- 四方由美(2014). 〈犯罪報道におけるジェンダー問題に関する研究：ジェンダーとメディアの視点から〉東京：学文社.
- 曾我部真裕(2016). 『実名報道』原則の再構築に向けて『論拠』と報道被害への対応を明確に. 〈Journalism〉 317: 83-90.
- 宍戸常寿(2011). デジタル時代の事件報道に関する法的問題.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モーレビュー〉 Vol.6:207-217.
- 死刑をなくす女の会(2004). 〈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彼女のくやしさがわかりますか?〉東京：社会評論社.
- 塩田幸司(2019). 放送の自由・自律とBPOの役割：放送番組の自主規制活動の意義と課題. 〈NHK放送文化研究所年報2019〉第63集：195-237.
- 浅野 健一(2006). 犯罪被害者とジャーナリズム：事件事故報道の解体的出直しを. 同志社大学社会学会〈評論・社会科学〉No.80：37-146.
- 山田健太(2014). 〈法とジャーナリズム〉東京：学陽書房.
- 大家重夫(2011). 〈肖像権 改訂新版〉東京：太田出版.
- 大月晶代(2006). 犯罪被害者の情報と報道のあり方. 〈レファレンス〉 2006年8月号. URL: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999815_po_066703.pdf?contentNo=1&alternativeNo=
- 五十嵐二葉(1991). 〈犯罪報道〉東京：岩波書店.
- 読売新聞大阪本社社会部(2013). 〈性犯罪報道〉東京：中央公論新社.
- 読売新聞社編(2003). 〈‘人権’報道：書かれる立場 書く立場〉東京：中央公論新社.
- 飯島滋明編著(2013). 〈憲法から考える実名犯罪報道〉東京：現代人文社.
- 飯室勝彦・渡辺真次・田島泰彦(1999). 〈新版 報道される側の人権〉東京：明石書店.
- 事件の取材と報道編集委員会(2005). 〈事件の取材と報道〉東京：朝日新聞社.
- 辻協葉子(2000). 犯罪被害者のプライバシー. 〈明治大学短期大学紀要〉No.67: 1-37.
- 小林直美(2014). テレビニュースに表象される女性被害者：内容分析による男性被害者との比較研究. 武蔵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社会学専攻博士号請求論文.
- 田島泰彦・原寿雄(2001). 〈報道の自由と人権救済〉東京：明石書店.
- 梓澤和幸(2007). 〈報道被害〉東京：岩波新書.
- 放送人権委員会(2017a). 放送人権委員会決定第63号「事件報道に対する地方公務員からの申立て」(テレビ熊本)：見解. URL: <https://www.bpo.gr.jp/?p=9008>
- 放送人権委員会(2017b). 放送人権委員会決定第64号「事件報道に対する地方公務員からの申立

て」(熊本県民テレビ) : 見解. URL: <https://www.bpo.gr.jp/?p=9010>

細井洋子・四方由美(1995). 女性犯罪の報道に関する一考察: 規範を再生産するメディアという観点から.〈犯罪と非行〉 No. 103: 24-41.

星野豊(2011). 総合研究 教育と法(22) 教員の淫行容疑逮捕に関する実名報道. 〈月刊高校教育〉 44(1): 78~83.

綾瀬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 メディアと被害者との溝、一挙に可視化. 〈毎日新聞〉(2019年1月27日).

被害者の実名、報じる意義は 朝日新聞「報道と人権委員会」〈朝日新聞〉(2018年6月4日). URL: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524992.html>